

## 환자에게는 환자의 예상 건강 관리 비용을 설명하는 '선의의 견적(Good Faith Estimate)'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특정 유형의 의료 보험이 없거나 특정 유형의 의료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건강 관리 항목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환자는 요청 시 또는 의료 관리 항목 및 서비스를 예약할 때, 의료 관리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의의 견적(Good Faith Estimate)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장비 및 병원 비와 같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최소한 영업일 기준 3일 이전에 의료 관리 항목 또는 서비스를 예약하는 경우, 예약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에서 서면으로 선의의 견적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영업일 기준 10일 이전에 의료 관리 항목 또는 서비스를 예약하는 경우, 예약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에서 서면으로 선의의 견적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의료 관리 항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에 선의의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에서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의의 견적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료 제공자 또는 시설로부터 이들에게 받은 선의의 견적보다 \$400 이상 더 많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 청구서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견적 및 청구서 시본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

선의의 견적에 대한 권리에 관해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www.cms.gov/nosurprises/consumers](http://www.cms.gov/nosurprises/consumers)를 확인하시거나, 이메일 [FederalPPDRQuestions@cms.hhs.gov](mailto:FederalPPDRQuestions@cms.hhs.gov), 또는 전화 1-800-985-3059로 연락하십시오.